

<p>제2020-80호 2020년 4월 29일(수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</p> <p>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0-13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3
- 여수시 고시 제2020-133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4
- 여수시 고시 제2020-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5
- 여수시 고시 제2020-1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6
- 여수시 고시 제2020-13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7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0-112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8
- 여수시 공고 제2020-1126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11
- 여수시 공고 제2020-112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26
- 여수시 공고 제2020-112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27
- 여수시 공고 제2020-113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8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.

점용·사용 (승인)번호 (허가(승인)일)	준공검사 신청자		점용·사용장소	허가면적 (㎡)	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	공사내용
	주 소	성 명				
2017-20 (2017.3.23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961-11번지 지선	653	2020. 4. 29.	삼산면 동도지구 연안시설 정비공사
2017-21 (2017.3.23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475번지 지선	1,827	2020. 4. 29.	삼산면 소거문항 방파제 연장공사
2017-22 (2017.3.23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425번지 지선	83	2020. 4. 29.	삼산면 변촌마을 물양장 보강공사
2017-41 (2017.5.8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903-2번지 지선	538	2020. 4. 29.	운두도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
2017-59 (2017.7.3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36-7번지 지선	1,105	2020. 4. 29.	찾아가고 싶은 섬 낭도 조성공사(규포지구)
2018-26 (2018.4.23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경호동 859-4	627	2020. 4. 29.	월호13통 소경도마을 부잔교 교체공사
2018-58 (2017.5.4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1144-3번지 지선	444	2020. 4. 29.	동도선착장 확포장 공사
2018-81 (2017.7.9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224-1	1,879.1	2020. 4. 29.	평도 방파제 연장공사
2018-87 (2018.7.27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903-2번지 지선	3,115	2020. 4. 29.	화양면 운두도 부잔교 및 도교설치
2019-5 (2019.4.24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223번지 지선	758	2020. 4. 29.	평도 방파제 연장공사
2019-6 (2019.4.24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경호동 744번지 지선	1,340	2020. 4. 29.	소경도 도선 선착장 뒤편 방파제시설공사
2019-7 (2019.4.24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돌산읍 금봉리1563(금죽도)	1,712	2020. 4. 29.	돌산읍 금죽도 방파제 연장
2019-8 (2019.4.24.)	여수시 시청로1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21-71	630	2020. 4. 29.	돌산읍 송도마을 선착장 정비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여수시 학동 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1. 사 업 명 : 여수시 학동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
 - 전라남도 여수시 장성1길 18-1, 2층(안산동) /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
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) / 대림산업(주)
3. 사업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번지 외 13필지
4. 사업개요
 - 대지면적 : 35,125.0m²
 - 연 면 적 : 116,422.0843m²
 - 규 모 : 지하 3층 ~ 지상 25층, 아파트 9동, 821세대
5. 사업기간 : 사업계획승인일 ~ 2021. 10. 31.
6. 변경내용
 - 연면적 변경
 - 단위세대 평면(동평면, 입·단면도 포함), 부대·복리시설 변경
 - 지상·지하주차장, 단지 내 옹벽 변경 등
7.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8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659-4097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여수시 고시 제2020- 13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변경일자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(㎡)	점용·사용 목 적	허가받은 자		변경사항(허가기간)	
				주 소	성 명	변경전	변경후
2011-013 (2020.4.29.)	여수시 남면 심장리 84-1번지지선 공유수면	200㎡ (직접110 간접90)	어구손질 및 보관용 바지설치	여수시 여문2로 11,104동 1210호(문수동 문수주공)	이명철	2015.06.01. ~ 2020.05.31.	2020.06.01. ~ 2025.05.31.

2020. 04. 29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고시 제2020-135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 (변경일자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면적(㎡)	점용·사용 목 적	허가받은 자		변경사항(허가기간)	
				주 소	성 명	변경전	변경후
2003-002 (2020.4.29.)	여수시 경호동 604-1번지지선 공유수면	480㎡ (직접480 간접0)	멀치건조장 운영	여수시 대경도길 15-22 (경호동)	문송식외1 (박재상)	2015.06.01. ~ 2020.05.31.	2020.06.01. ~ 2025.05.31.

2020. 04. 29.

여 수 시 장

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여수시 웅천동 1843번지(웅천택지개발지구 5-1블록)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1. 사 업 명 : 여수 웅천지구 5-1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(주)부영주택 대표 최양환
3. 사업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43번지(웅천택지개발지구 5-1블록)
4. 사업개요
 - 가. 대지면적 : 31,496.3m²
 - 나. 연 면 적 : 102,107.6349m²
 - 다.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25층, 아파트 10개동 외, 608세대
5. 변경내용
 - 가. 공동주택(지하주차장 포함) 기초 형식 변경
 - 나. 사업기간 변경(5개월 증) 등
6. 사업기간 : 2019. 4. 23. ~ 2022. 3. 10.
7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659-4097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,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 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2. 말소일자 : 2020. 4. 28.
3. 공고기간 : 2020. 4. 29. ~ 2020. 5. 14.(15일간)
4. 공고장소 :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5. 공시송달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	건축물대장 직권 말소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붙임참조
	주소 (대장상주소)	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건축물의 부존재(철거·멸실)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건축물대장 직권말소(붙임참조)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

5. 유의 사항

- 가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(☎061-659-412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[붙임]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

연 번	대지위치	대장상 소유자		건축물대장 현황					비고
		성명	주소	구분	층수	구조/지붕	용도	연면적	
1	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357번지	정영*	오림동 357번지	주2	1층	시멘트블록/슬레이트	주택	68.02㎡	
				주2	1층	시멘트블록/슬레이트	변소	1㎡	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의견제출 내용	당사자	성명(명칭) <hr/>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	기타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공 고

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규인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제명 변경

-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⇒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

※ 상위법령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름

(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⇒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)

□ 인용조문 변경(제2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)

인용 조문	현 행	개 정
제2조(민간위탁의 동의요청)	조례 제5조	조례 제7조
제5조(위·수탁신청서)	조례 제6조	조례 제10조
제7조(위탁기간)	조례 제9조제2항	조례 제6조
제8조(협약의 체결 등)	조례 제9조	조례 제12조

□ 중복·불필요한 조항 삭제

○ 제6조(심사위원회)
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되어 기존 시행규칙상 관련 조문은 중복으로 삭제

3. 입법예고기간 : 2020. 4. 29. ~ 5. 19.(20일간)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총무과장)에게 제출하거나 메일(effectyun@korea.kr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사항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, 1청사)
-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총무과장)
- 전 화 : 061)659-3241, 팩스 : 061)659-5807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 : 여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”로, “제5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6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민간위탁의 동의요청) ① 「<u>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</u>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(이하 “소관부서”라 한다)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위·수탁신청서)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심사위원회)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수탁기관선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민간위탁의 동의요청) ① 「<u>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</u>」----- <u>제7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·수탁신청서) --- <u>제10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심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은 총무과장, 소관사무의 담당관, 담당과장, 및 사업소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여수시의회 시의원 2명과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소관사무의 담당이 된다.</u></p>	
<p>제7조(위탁기간) ① 조례 <u>제9조제2항의</u>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위탁기간) ① -- <u>제6조에</u> 따른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조례 <u>제9조의</u>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과 위</p>	<p>제8조(협약의 체결 등) ① -- <u>제12조</u>에 따라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· 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, 위·수탁협약의 체결,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[별지 제1호 서식]

여수시 ○○○○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

제 출 자 : 여수시장

1. 요구이유

- -----
- -----

2. 주요골자 (※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)

가. -----

나. -----

다. -----

라. -----

여수시 ○○○○ 사무의 위·수탁 협약서 표준서식

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여수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·수탁함에 있어 여수시장을 「갑」 이라 하고, ○○○○를 「을」 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위·수탁사무) 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(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: 별지와 같다)

1. 위·수탁사무

사 무 명	사무의 내용

2. 위·수탁시설

시 설 명	내용 및 수량

3. 위·수탁장비

장 비 명	내용 및 수량

제2조(위·수탁기간) ①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로 한다.

②갑 또는 을이 위·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의 해지) ①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.

②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,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1.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
2.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
3.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

제4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.

제5조(해석)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.

제6조(수탁사무의 처리) 이 협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.

제7조(시설 및 장비의 관리) 을은 이 협약에 따라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 및 장비의 반환)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·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입금의 처리) <위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 작성>

제10조(예산의 지원) <위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작성>

제11조(정산 및 보고) <수입금 및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경우 작성>

제12조(보험 및 손해배상) ①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.

②을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)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,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.

[협약체결일]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갑 : 여 수 시 장 ○ ○ ○ (직인)

을 : ○○○○○○ 대표 ○ ○ ○ (인)

※ 위·수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 표준서식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작성한다.

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

관리번호 :							
① 관리부서			② 위탁사무명				
③ 위탁기간			④ 수탁단체명 (대표자)				
⑤ 고용인원	명		⑥ 재계약횟수	회			
⑦ 수탁자 선정방법			⑧ 최초위탁일				
⑨ 지원예산액(백만원)							
계	년도		년도		년도		
⑩ 관련 공무원 조서							
소속	직위	직급	성명	재직기간	현 근무처	비고	

구분		내용		위탁내용			
일 반 현 황	위탁사무 명			시설규모	총 m^2 (지하 층, 지상 층)		
	위 치						
	준 공 일			총공사비	백만원		
	시 설 및 장 비						
	시설(사무) 처리근거						
	관리부서	과(T. -)		담당자	(T. -)		
수 탁 관 리	수탁기관						
	위탁구분	최초 위탁일					
		재위탁(재계약)기간 : . . ~ . . . (공증일 : . . .)					
		(공증일 : . . .)					
		(공증일 : . . .)					
	연 간 수 탁 액	년 백만원		자부담			
근무인력 (명)	구분	계	관장	직원	비 고 (자격증내역)		
주요사업 추진사항	○ ○ ○						
첨부서류	○ 협약서 사본 1부.						

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.

◆ 어업면허 처분 내역 ◆

면허 번호	어업의 종류	시설 방법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수산자원 조성금 (천원)	어업권자		비고
							주소	성명	
10436	마을어업	-	6	신월 조도	2020.6.01. 2030.5.31.	-	여수시 신월동	신월어촌계	10160 재개발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14조 제2항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 번호	연장 허가 번호	어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어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수산자원 조성금 (천원)	어업권자		비고
								주 소	성 명	
11244	2020-60	패류양식 (수하식)	3	돌산 금봉	2010.07.13. 2020.07.12.	2020.07.13. 2030.07.12.	300	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28-1	이성규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0. 4. 29.

여 수 시 장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식품위생법 제36조(시설기준), 제37조(영업허가 등)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통지 하였으나,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9일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)
2. 처분내용 :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
3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6조(시설기준), 제37조(영업허가 등), 제75조(허가취소 등)
4. 공고기간 : 2020. 4. 29. ~ 2020. 5. 27.
5.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

업종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청문일시	청문장소	위반내용	처분내용
식품제조 가공업	여수갯구운	김*정	여수시 봉산1로	2020. 5. 28. (목) 10:00	여수시무료 법률상담실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영업소 폐쇄
즉석판매 제조가공업	커피앤거부기	배*석	여수시 무선길 20-2	2020. 5. 28. (목) 10:30	여수시무료 법률상담실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영업소 폐쇄
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	맑은물예	문*현	여수시 신기북7길	2020. 5. 28. (목) 11:00	여수시무료 법률상담실	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	영업소 폐쇄

6. 유의사항
 -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「영업소 폐쇄」 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.
 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의처 :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☎ 061)659-4232